

의 안 번 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월 4일

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월 4일

발 의 자 : 김국기 · 박경숙 · 김꽃임 · 이양섭 ·
이의영 · 이종갑 · 임병운 의원

1. 제안이유

-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,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(안 제3조)
- 예방 및 지원사업(안 제4조)
- 실태조사 및 전기재해 예방교육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재정지원(안 제7조)
- 권한의 위임 등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3. 1. 6. ~ 11.
- 협의 :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,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.
2. “전기재해”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.
3. “농어업 전기시설”(이하 “전기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과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(이하 “전기재해”라 한다)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
2.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

3.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예방 및 지원사업) 도지사는 농어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부대비용 지원
2. 전기재해 예방·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
3. 전기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
4.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
5.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지원
6. 전기재해 시설 복구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, 그 밖에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전기재해 예방교육)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
2.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교육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재정지원)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재해 예

방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·군,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어업인”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전기안전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전기재해”란 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□ 농어업재해대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0. “농업용 시설”이란 축사(畜舍), 잠실(蠶室), 원예 재배시설,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.
12. “어업용 시설”이란 어선, 어구(漁具), 어망(漁網),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.

□ 양식산업발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0. “양식시설”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, 시설물, 장비 등을 말한다.

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
- 전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,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4조(예방 및 지원사업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
-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추 계 결 과 : 47.5억원(도비 37.8, 시군비 4, 기타 5.7)
 - (기존사업 1개) 가축재해보험 : **36억원**
 - (신규사업 2개) 전기시설 안전점검 11.4억원 + 예방 홍보 및 교육 0.1억원 : **11.5억원**
-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, 시군비 ※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